

수출거래 보고서

1. 회사명					
2. 대표자	직명		성명		
3. 주소					
4. 담당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	
5. 해당수출 거래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크)	① 국내에 있는 외국선박 또는 항공기가 자체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선기자재 또는 항공기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②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부분품을 무상으로 수출할 경우				
	③ 재외공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을 포함한다),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공용물품				
	④ 우리 정부가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적 약속에 따라 국제기관에 발송하는 물품으로서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품목				
	⑤ 수입한 전략물자를 그 제조업체 또는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⑥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아 수출한 전략물자를 수리, 성능미달, 대체 등의 사유로 재수입하여 수리한 해당 전략물자 또는 대체한 전략물자를 수출허가서상의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경우(같은 사유로 긴급한 필요가 있어 동일한 전략물자를 수출허가서 상의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고 당초 수출했던 전략물자를 다시 수출통관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⑦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초민감품목, 소프트웨어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로서 해당 품목의 수출가액의 합계가 미화 8천불 이하인 경우(다만, 동일 구매자에 대한 최종 수출통관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 미화 3만불을 초과하여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및 해당 전략물자가 대량과피무기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반입하는 조건인 경우 또는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조건인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품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암호화 품목(통제번호 : 5A002.a.1~5A002.a.4, 5B002, 5D002)을 민간기업의 내부시스템 구축·운영 용도 혹은 민간기업의 민수용 제품 개발·생산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최종목적지 국가가 바세나르체제 가입국인 경우 또는 별표 23의 국가들에 본사를 둔 민간분야 최종사용자인 경우				
	⑩ 시스템관리전용 암호화기능(SNMP, SSH)으로 인하여 전략물자로 분류된 암호화품목(통제번호 : 5A002.a.1~5A002.a.4, 5B002, 5D002)을 수출하는 경우(다만, 해당 품목이 다른 통제번호에도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5. 해당수출 거래유형 (√ 체크)	⑪ 소프트웨어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문제(버그)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일한 최종 수하인 또는 사용자에게 문제해결 프로그램(패치프로그램)을 수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⑫ 제10조제1호의 가의1 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재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로써, 제10조제1호의 가의1 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⑭ 별표2(이중용도품목)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등을 검사, 시험, 보정, 수리를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반입하는 조건인 경우 또는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조건인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품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⑮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가의1”지역 수출 시 최종사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자의 최대주주/수출자의 해외본점/수출자가 최대주주인 외국현지법인/ 수출자의 해외지점(단, 수출자가 본점)							
	⑯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암호화품목(통제번호: 5A002.a.1~5A002.a.4, 5B002, 5D002) 수출 시, 최종사용자는 최대주주가 한국법인인 민간기업이고, 최종사용용도가 내부시스템 구축·운영 용도 혹은 민수용 제품의 개발·생산 용도인 경우							
	⑰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암호기능이 주요 기능 혹은 기능군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만 한정되고, 공개되거나 상용화된 암호화 표준을 구현하여 정보를 송수신하고 저장하는 민수용 소프트웨어 중 민간기업의 운영효율화 및 판촉 지원 용도, 모바일 단말기 용도로 수출하여 허가면제 받은 경우							
	⑱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서비스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설치하고, 최종사용자가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설치하는 소프트웨어가 별표2 제5부제2장 주3에 따른 예외조항을 만족하여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개별수출허가를 면제받은 경우							
	⑲ (중개허가 대상) 법 제19조제1항의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때							
	⑳ (중개허가 대상) 중개의 대상이 되는 수출의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가”지역에 속하는 경우							
㉑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중개허가 면제								
6. 수출거래내역	구매주문 번호	품(기술)명 (모델명)	통제번호	HS번호	수입국	선적일 (예정일)	단위 및 수량	수출액 (USD)
7. 수출참조번호	B/L 번호							
	수출신고수리번호							
8. 수요자	상호		대표자	전화번호 (Fax번호)	주소			
	구매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6조 및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별 특례에 의거 수출허가 면제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수출하였기에 동 조항에 따라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동 보고서에 허위사항을 기재시 「대외무역법」 등에 의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를 감수하겠습니다.								
20 . . .								
보고자					서명 또는 인			